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238
----------	-------

발의연월일 : 2026. 9. 9.

발 의 자 : 장철민 · 백혜련 · 송재봉
임문영 · 권향엽 · 전은수
오세희 · 장종태 · 정진욱
김원이 · 허성무 의원
(11인)

제안이유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기후·에너지·자원 관련 재정(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은 다부처에 분산·운영되어 행정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있음.

다부처 간 파편화된 기후·에너지·자원 관련 재정의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 책임성 강화 및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특히 기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부담금이 목적 외 용도(기후개선 등)로 광범위하게 지출되어 납부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에 따라 자원 분야 법정부담금을 주세입원으로 하는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고, 기금의 자원안보분야 예산체계 구축을 통해 세입·세출의 정책적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석유·가스·석탄·광물 등 국가 핵심자원의 공급망 강화에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 공급망 위기 대응 및 자원안보 사업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안보기금을 설치함(안 제39조).
-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및 부과금,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광업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담금 등 자원안보 관련 법정부담금을 기금의 주세입원으로 편성함(안 제40조).
- 다. 기금의 재원을 핵심자원의 수급, 비축, 가격안정, 연구개발 등 자원 안보 강화를 위한 사업의 기금용도로 명시함(안 제41조).
- 라. 기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하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
- 마. 기금의 세출예산 중 특정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
- 바.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도록 하고, 손실금 발생 시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 사.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

회계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기업회계와 배치되는 「국가재정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 근거를 규정함(안 제45조).

아. 제7장 자원안보기금 신설에 따라 기존 제7장 보칙 및 제8장 벌칙의 장·조문 번호를 각각 순연하고, 비밀준수의 의무 및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 관련 인용 조항을 정비함(안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다음의 “제7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42조 앞의 “제8장 벌칙”을 삭제한다.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를 각각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로 한다.

제7장(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자원안보기금

제39조(기금의 설치)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대응, 핵심자원의 공급망 안정화 및 국가자원안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안보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0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및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에 따른 부과금
과 가산금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5.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조성된
광해방지사업금 및 같은 법 제24조·제26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
금
 6. 「광업법」 제87조에 따른 부과금 및 가산금
 7.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8에 따른 과징금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과징금
 9. 「한국석유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입금
 10. 용자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11. 기금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12.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차입금·예수금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 재원
- 제41조(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핵심자원 안보를 위한 비축 사업
 3. 핵심자원 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
 4. 핵심자원의 유통 및 품질관리를 위한 사업
 5. 핵심자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6. 핵심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재자원화를 위한 사업
 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및
자원개발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한 사업(제40조제5호에 따른 광해방
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8. 「석탄산업법」 제29조에 따른 석탄산업 안정을 위한 사업
9. 핵심자원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사업 지원
10. 핵심자원의 안보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기술지원·실증 및 보급 사업
11. 핵심자원의 대체 자원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기술지원·실증 및 보급 사업
12. 핵심자원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
13. 핵심자원 안보에 필요한 조사·연구·국제협력·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를 위한 사업
14. 핵심자원안보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채무보증을 위한 자금의 지원을 포함하며, 제40조제5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5. 핵심자원안보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16. 핵심자원 복지사업
17. 기금의 설치·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18.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19.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여유 재원 전

출

20. 그 밖에 핵심자원 안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용자를 할 수 있으며, 용자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2.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

3. 국제협약에 따른 심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용자를 지원받은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실패하여 지원받은 용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0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법정부담금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에 징수한 총금액(법령에 따라 환급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금에 전출(轉出)하여야 한다.

제4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취급 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지출사업의 이월) 기금의 지출계획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국가재정법」 제7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4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補填)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제45조(기업회계의 원칙) ① 기금은 필요할 때에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업회계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기업회계의 원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국가재정법」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6조(종전의 제3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보칙

제47조(중전의 제40조)제4호 중 “제39조제2항에”를 “제46조제2항에”로 한다.

제48조(중전의 제41조)제2호 중 “제39조제2항에”를 “제46조제2항에”로 한다.

제49조(중전의 제4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벌칙

제49조(중전의 제42조)제2항제2호 중 “제40조를”을 “제47조를”로 한다.

제50조(중전의 제43조) 본문 중 “제42조의”를 “제49조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중전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이 조에서 “중전 특별회계”라 한다)의 출자·출연·보조·융자 및 그 밖의 법률행위 중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그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의무를 자원안보기금이 승계하는 것은 이 법에 따른 자원안보기금의 출자·출연·보조

· 용자 및 그 밖의 법률행위로 본다.

②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1항에 따른 용자 중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용자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종전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용자에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를 삭제한다.

별표 2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6항 중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된다”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기금의 수입으로 한다”로 한다.

③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세입으로 한다”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기금의 수입으로 한다”로 한다.

④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5항 중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를 “「국

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기금의 수입으로 한다”로 한다.

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8제4항 중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기금의 수입으로 한다”로 한다.

⑥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중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되고”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기금(이하 “자원안보기금”이라 한다)의 수입으로 하고”로 한다.

제18조제9항 중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를 “자원안보기금의 수입으로 한다”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투자계정”을 “자원안보기금”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 제20조제4항, 제35조제6항, 제37조제6항 및 제49조제4항 중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각각 “자원안보기금”으로 한다.

⑦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기금의 세출

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로 한다.

⑧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기금에 귀속된다”로 한다.

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항 중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기금의 수입으로 한다”로 한다.

⑩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다”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기금 또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다”로 한다.

⑪ 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고 또는 자원안보기금에 납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제7장 자원안보기금</u> <u>제39조(기금의 설치) 산업통상부</u> <u>장관은 자원안보위기대응, 핵심</u> <u>자원의 공급망 안정화 및 국가</u> <u>자원안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u> <u>하기 위하여 자원안보기금(이하</u> <u>“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 <u>제40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u> <u>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u> <u>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u> <u>업법」 제14조 및 제35조에</u> <u>따른 과징금</u> <u>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u> <u>업법」 제18조 및 제37조에</u> <u>따른 부과금과 가산금</u> <u>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u> <u>업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u> <u>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u> <u>34조의2에 따른 부담금 및 가</u> <u>산금</u> <u>5.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u> <u>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u> <u>라 조성된 광해방지사업금 및</u> <u>같은 법 제24조·제26조에 따</u>

<신 설>

른 부담금 및 가산금

6. 「광업법」 제87조에 따른
부과금 및 가산금

7.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
의8에 따른 과징금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과징금

9. 「한국석유공사법」 제11조
제1항제4호에 따른 납입금

10. 용자로부터 발생하는 원리
금 수입

11. 기금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12.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차입금·예수금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
재원

제41조(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
다.

1.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핵심자원 안보를 위한 비축
사업

3. 핵심자원 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
4. 핵심자원의 유통 및 품질관리를 위한 사업
5. 핵심자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6. 핵심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재자원화를 위한 사업
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및 자원개발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한 사업(제40조 제5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8. 「석탄산업법」 제29조에 따른 석탄산업 안정을 위한 사업
9. 핵심자원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사업 지원
10. 핵심자원의 안보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기술지원·실증 및 보급 사업

11. 핵심자원의 대체 자원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기술지원·실증 및 보급 사업
12. 핵심자원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
13. 핵심자원 안보에 필요한 조사·연구·국제협력·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를 위한 사업
14. 핵심자원안보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채무보증을 위한 자금의 지원을 포함하며, 제40조제5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5. 핵심자원안보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16. 핵심자원 복지사업
17. 기금의 설치·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18.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9.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여유
재원 전출

20. 그 밖에 핵심자원 안보를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1
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용자를 할 수 있으며, 용자의 기
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2.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

3. 국제협약에 따른 심해저광물
자원개발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용자를 지원받은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실패하여 지원받은
용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때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신 설>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0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법정부담금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에 징수한 총금액(법령에 따라 환급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금에 전출(轉出)하여야 한다.

제4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

<신 설>

<신 설>

<신 설>

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지출사업의 이월) 기금의 지출계획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국가재정법」 제7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4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補填)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제45조(기업회계의 원칙) ① 기금은 필요할 때에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업회계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기업회계의 원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국가

<u>제7장 보칙</u> <u><신 설></u>		<u>제8장 보칙</u> <u><삭 제></u>	
<u>제39조</u>(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생략)		<u>제46조</u>(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현행 제39조와 같음)	
<u>제40조</u>(비밀준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자원안보에 관한 비밀정보를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제36조 또는 제37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및 <u>제39조제2항에</u>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u>제47조</u>(비밀준수의 의무)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제46조제2항에</u>----- ----- ----- ----	
<u>제41조</u>(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생략)		<u>제48조</u>(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 ----- ----- -----. 1. (현행과 같음)	

2. 제36조 또는 제37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8장 벌칙

<신 설>

제42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2. 제4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자원안보에 관한 비밀 정보를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한 자

③ (생 략)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

2. -----

---제46조제2항에-----

<삭 제>

제9장 벌칙

제4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제47조를-----

③ (현행과 같음)

제50조(양벌규정) -----

-----제49

조의-----

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제44조</u>(과태료) (생략)	----- ----- -----. ----- ----- ----- -----. <u>제51조</u>(과태료) (현행 제44조와 같음)
---	--